

- 구미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 -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1년 11월 14일

나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1년 11월 14일

라. 상정일자 : 2001년 11월 20일

제 6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선산출장소장 최 화 영

나. 제안이유

○ 2000년 규제개혁 추진에 의거 양수기를 대여 받은 자는 조례 및 감독 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, 선량한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및 시정을 명할 수 있으나, 관리소홀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규정이 없으며, 법령에 근거 없는 현실성이 없는 규제이므로 주민편의를 위하여 폐지.

다. 주요내용

○ 조례 3조의 규정에 의한 양수기는 읍, 면, 동단위 및 농지개량조합에 배정 보관하여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농지개량조합이 농업기반공사로 통합 변경되었고 농업기반공사에 배정 보관하는 것은 현실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현실성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.

- 조례 9조의 규정에 의한 양수기를 대여 받은 자가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이므로 주민편의를 위하여 폐지.

라. 참고사항

- 관련법령 : 농어촌정비법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령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정 완 진

- 이 개정조례안은 주민편의를 위해 규제 조항을 과감히 철폐하여 양수기운영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
- 농지개량조합이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에 의거 농업기반공사로 통합 운영됨으로서 이전의 농지개량조합 역할과는 거리가 있어 조례 3조(보관)의 규정에 『농지개량조합』을 삭제함이 타당하며
- 조례 제9조(관리 및 감독) 규정은 현재의 농촌 정서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한해 복구 시 양수기를 사용하는 농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으로서 이러한 규정은 폐지하여 사용 농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 가결